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2012. 10

김영덕

■ 검토 배경	4
■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필요성	5
■ 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사례	11
■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방안	15
■ 결론	25

요 약

- ▶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종사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에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1/4이 최근 5년 내에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임.
 - 2011년도 1년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 중,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르렀음.
- ▶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음.
 - 법정 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 및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음.
 -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건설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첫째,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둘째, 등록 요건은 아니나 교육훈련 이수시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10시간 내외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함.
- ▶ 규제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나 교육훈련 도입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 검토 배경

-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주거시설 등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 특히, 정부 및 지자체, 국영 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 물량 비중이 2010년 금액 기준으로 41.9%를 차지했음. 즉, 국가가 가장 큰 건설산업의 수요자임.
- 따라서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종사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역할과 책임 인식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윤리적인 경영 마인드와 건설산업에 참여한다는 소명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1년 한 해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5,461개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개사, 등록말소 업체의 수도 2,241개사에 이르는 등 건설업체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영업정지 처분 사유로 보면, 등록 기준 미달 및 연평균 실적 미달 등의 산업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 불법 하도급 등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임.
 - 과징금 처분 사유의 50% 가까이는 하도급 관련 위반에 따른 것임.
- 1999년 건설업 면허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장 경제에 입각한 규제 완화 차원의 지속적인 공사 입찰 시 실적 제한 완화, 겸업 제한 폐지 등의 여파로 건설산업 신규 진입업체들의 진입 여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최근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752개사), 2008년(682개사), 2009년(503개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2월부터 시행된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¹⁾의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540개사)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1년도 1년 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 중에서 설립

1) 2010년 2월, 건설업자가 건설업종 추가 등록시 자본금·기술자의 일부를 중복 인정토록 등록 기준을 변경함.

5년 이내의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르러 신규로 진입하는 건설업체들의 기본적인 준법 경영 의식 및 활동과 윤리적인 책임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건설산업 내부적으로 부적격한 건설업체의 진입은 건설시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음은 물론,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상 다른 건설업체 및 하부의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 의식을 갖춘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과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새로이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산업과 관련된 법규적, 윤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에 대한 건설업체로서의 소명의식과 윤리적 마인드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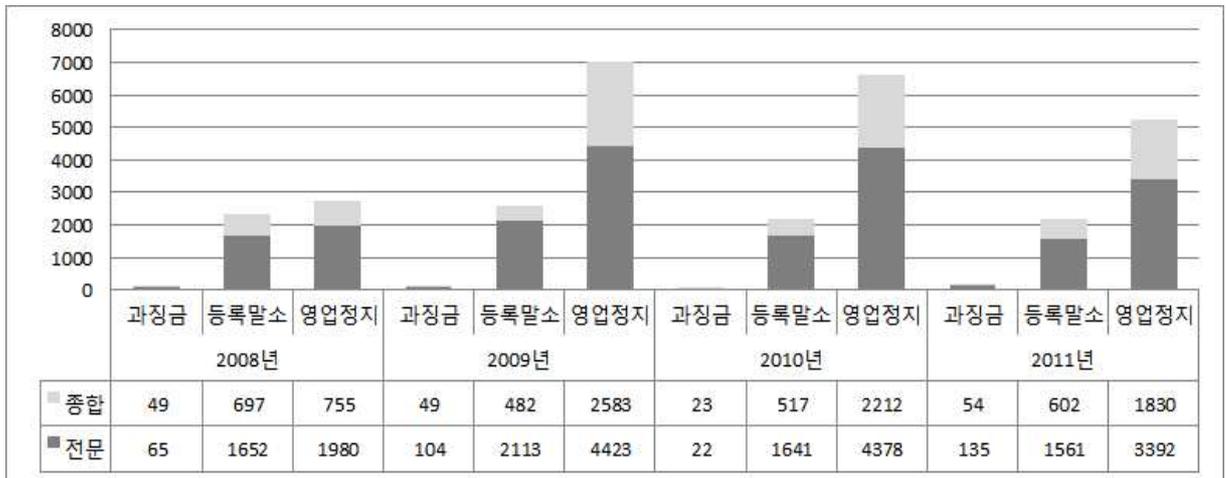
II.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필요성

1.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처분 현황

- <그림 1>과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5,000여 개사의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300여 업체가 등록 말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음.
-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한 해 동안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처분 건수는 총 1만 4,367건임.
 - 이 중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처분 건수는 4,109건이며,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처분 건수는 1만 258건임.
 - 행정제재의 유형은 등록말소 2,241건, 영업정지 5,461건, 과징금 201건, 과태료 1,385건, 시정명령 5,061건 그리고 기타 처분 등임.

<그림 1> 최근 4년간 건설업체 행정제재 처분 추이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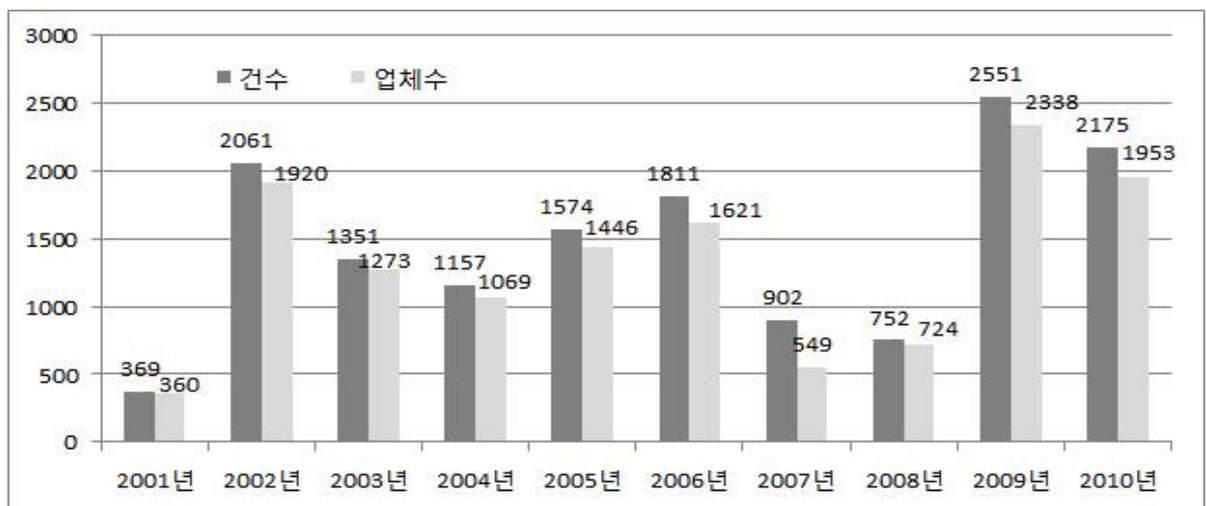


<표 1> 2011년 건설업체 행정제재 처분 현황

구분	합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기타
건수	14,367	2,241	5,461	201	1,385	5,061	18
비율(%)	100	15.6	38.0	1.4	9.6	35.3	0.1

- 특히, 행정제재 처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 연도별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추이



- 또한, 상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업체들은 부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위반을 하거나 한 개 이상의 중복적인 사유로 행정제재를 받았음.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인 행정제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행정제재의 중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로는 등록 기준 미달 및 실적 미달, 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의 사유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별로는 등록 기준 미달과 연평균 실적 미달 등 등록 관련 위반이 전체의 96.3%를 차지했음. 또한 하도급 제한 및 불공정 하도급 제한에 대한 위반 등 도급,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처벌도 건수도 170여 건에 이르고 있음.

<표 2> 2011년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체 사유별 현황

사유	합계	건설업 등록 위반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담합 및 뇌물수수
건수	4,764	4,589	122	36	12	5
처분 비율(%)	100	96.3	2.6	0.7	0.3	0.1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 연평균 100여 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의 과징금 처분 사유로는 일괄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동일 업종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표 3> 2011년 과징금 처분 건설업체 사유별 현황

사유	합계	건설업 등록 위반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담합 및 뇌물수수
건수	167	1	156	-	10	-
처분 비율(%)	100	0.6	93.4	-	6.0	-

- 이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들 중에는 건설업체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동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본 건설업체들의 행정제재 처분 사유를 종합해보면, 등록 기준 미달 및 주기적 신고 불이행 등 건설업체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사례와 불법 하도급, 불법 시공 등 비윤리적인 경영 활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건설시장 침체로 인한 하도급 관련 법제도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업체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는 바, 7개사 모두가 건설업체임.
 -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건설업체의 검찰 고발 건수도 2010년 4건에서 2011년 10건, 2012년 5월 현재 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밖에도 건설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 환경, 품질 등의 관련 법규 위반도 지속되고 있음.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등 공사 금액 미계상, 기술자 신고사항 미준수, 품질관리 소홀 등 품질관리 법규 위반 등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산먼지 다량 발생, 토사 운반 불량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2. 신규 건설업체 진입 현황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

- 건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건설업체는 2007년(752개사), 2008년(682개사), 2009년(503개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2월부터 시행된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²⁾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540개사)하였음.

2) 2010년 2월부터 건설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기술자 일부를 중복 인정토록 특례 조항을 제정한 바 있음.

- 반면, 2007년 이후 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0년 건설 기성액이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도태되거나 퇴출된 건설업체 수는 늘어나지 않았음. 즉, 2009년부터 중견 규모 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체계(워크아웃, 기업회생 절차) 구축과 건설업 등록요건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9년 87개사에서 2010년에는 86개사로 1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즉 2011년 한 해(2011.1.1.~12.31)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일반건설업체 2,047개 업체 중 설립(등록)된 지 5년 이내의 업체는 473개사로서 전체의 23.1%를 차지했음. 특히, 등록한 지 3년 이내인 업체도 168개사에 이르렀음.

<표 4> 2011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상 행정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의 설립 연도별 현황

건설업 등록일		처분 분야			계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5년 이내	0~3년 이내	141	27	2	168
	3년 초과~5년 이내	278	23	2	304
	소계	419	50	4	472
5년 초과		1,405	170	50	1,575
총계		1,824	220	54	2,047

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 이와 같이 2011년 중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5년 이내 즉,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건설업체들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체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로서 갖추어야 할 기업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 다른 한 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정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들의 복잡성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한 행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하도급법」 및 발주기관 자체의 내규 등 복잡한 법률적 제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음.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이 이들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위반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됨.

3.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의 필요성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은 지속적인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법 위반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인 행태도 많지만, 등록 요건 미달 및 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도 많은 상황임.
- 이렇게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기업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건설업체로서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상 법적 요건에 대한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건설산업과 건설산업을 둘러싼 법률적, 윤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 특히, 건설업체로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규의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신규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유입인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건설시장에 진입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행정제재 처분 건수가 전체 행정제재 처분 건수의 1/4에 가깝다는 것은 신규 건설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서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및 윤리적인 기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을 나타냄.
- 또한, 건설업체의 하도급 제한 및 불법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하도급 질서의 혼

란은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인해 퇴출할 경우 하자 담보책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법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 등 하도급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하도급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하도급 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윤리적인 마인드 형성 및 건설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전달 노력은 법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사례

1.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현황

- 현재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시장 진입의 등록 요건으로서 교육과정 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들 업종의 공통점은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 경제적인 목적 등과 직결되어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식품산업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거한 의무교육 이수를 설립 및 영업의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밖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교육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법인 형태에서는 관련 실무 담당자 혹은 해당 실무 임원이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에서 다루는 교육과정들은 해당 업종 관련 법률과 해당 업종에 참여하는 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및 소명의식 정립, 준법 영업 활동의 필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정 의무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의 업자들이 회원인 협·단체가 실시하고 있음.

<표 5>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현황

관련 법률	대상	실시기관	주요 내용	비고(운영 등)
식품위생법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	각 관련 단체	- 관련 법률 - 신규 영업자의 자세와 품질관리 등 - 윤리	4~8시간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신규업자 (영업허가 필수사항)	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신규 영업자의 자세 등	8시간 집합 교육
MMA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및 가공용 쌀 배정 및 사후관리 규정	가공용 쌀 매입 대상자 신규 지정 업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 지침, 가공용 쌀 부정 유통 방지 및 배정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등	8시간 집합 교육
축산법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농업기술센터, 축산대학외	※현재 교육과정 마련 중	미정
대부금융업법	신규 대부 중개사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부중개업무 규정 및 민원 예방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된 준법 영업활동 - 법적 유의 사항 등	4시간 집합 교육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6개월 이내 신규 상장사 (※공시 담당 임원 대상 교육과 공시 담당자 교육)	코스닥협회	- 공시 관련 법규 - 공시 업무처리요령 - 불성실 공시 사례 및 준법 공시 요령	10시간 집합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신규 다중 이용업 (22개 업종) 사업자	소방안전협회	- 소방 안전 교육 - 준법 사항	1일 8시간 집합 교육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자체의 조례	신규 옥외 광고업 대표자 및 종사자	한국옥외광고협회 및 지자체(조례)	- 옥외 광고업 관련 법률 - 신기술, 신자재 등 기술 교육 - 준법 옥외 광고물 설치 관련 사항	교육시간은 대표자와 종사자에 따라 다름
평생교육법	신규 학원(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각 지방의 학원연합회, 각 교육지청	- 학원과 관련된 정부 행정 관련 사항 - 평생 교육자로서의 사명 및 역할 - 평생교육법 등	3시간 집합 교육

2.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사례

(1) 식품 관련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업, 외식업 등의 신규 진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허가가 가능함.
 - 식품 관련 업종에 따라 교육 의무 시간은 상이함(4~8시간).
 - 교육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 등 광범위함.
 -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관련 법률, 신규 영업자의 자세, 품질관리 등 관련 법률 및 윤리 관련 내용임.
 - 교육 방법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식품 및 위생 관련 협회에서 시행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 관련 업종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영업허가 시 교육 훈련 이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교육 의무시간은 8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규 영업자의 자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 교육 방식이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농림부 「MMA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및 가공용 쌀 배정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쌀가공협회에서는 가공용 쌀 매입 대상자 신규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의무시간은 8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 지침, 가공용 쌀 부정 유통 방지 및 배정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등임.
 -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 교육 방식이며 한국쌀가공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최근 개정된 「축산법」(2011. 11)에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있음. 현재 세부적인 의무교육 방식 및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
 -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 관련 대학 등의 기관·협회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현재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간 등이 논의되고 있음.

(2) 기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대부중개업무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 등록된 신규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대부금융업법」 제4조 제1항 및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시행함.
 - 교육 대상은 대부중개사의 대표자이며, 법인 형태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집합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중개업무규정」 및 민원 예방, 대부중개업무와 관련된 준법 영업활동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적 유의사항 등을 포괄하고 있음.
 -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증서의 유효 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함.
- 코스닥협회에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신규 상장사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교육 대상은 실무자 및 임원임.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시행함.
 - 교육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상장사이며 교육은 공시 담당자가 이수토록 함.
 - 교육 명칭은 ‘코스닥공시담당자 전문 과정’이며, 교육 내용은 공시 관련 법규 및 업무처리 요령, 불성실 공시 사례 및 관련 제재 내용 등임. 10과목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스닥협회에서 교육 시행함.
 -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담당 임원 전문 연수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포함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신규 다중 이용업 사업자들에 대하여 ‘소방 안전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음
 - 22개 업종의 다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1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각 지역의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하여 옥외 광고업 신규 등록 시 관련 법률 혹은 조례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염 병 예방 및 신규로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2일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또한, 신규 학원 등을 설립할 경우도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법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음.

3. 기타 사례

-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 시 권장사항 혹은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서 또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재에 대한 보험,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업종에 종사한 경험과 더불어 주 정부 차원의 면허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의 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면허 취득에 기본적인 지식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로서의 자질을 평가함.
- 건설업 면허나 허가 제도가 없는 영국에서는 건설업체 자격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정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자격자 명부인 ‘Approved List’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규 진입 건설업체들의 기본적인 자질 확보를 유도하고 있음.

IV.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방안

1. 도입 취지

- 건설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주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높은 산업임. 따라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즉 발주자 및 건설업체, 수요자들의 산업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소명의식과 윤리적인 마인드 조성,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 내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 비윤리적인 경영활동 등이 지속되어 오면서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행정제재 처분의 지속적인 증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실추되고 있다는 것임. 이렇게 형성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큰 상황임.
- 따라서 건설업체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기업 윤리 및 투명 경영의 정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그리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규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 의식 부여와 공공적인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전한 경영관의 형성, 건설산업 관련 법률 및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제반 경영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은 향후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도입의 기본 방향

-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훈련 도입은 최근의 경제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진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신규 진입 건설업체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유도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으로 건설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업 윤리관 및 윤리경영 활동,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관련 법률 등을 학습하고 건설업체 CEO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 및 소양을 양양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교육 훈련의 시간과 과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타 산업에서의 법정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최소화하되 건설업체 CEO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건설산업 관련 지식과 정보, 자세 및 역할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함. 또한, 그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업체 CEO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3.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의 성격

- 건설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각종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신규 진입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제도가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제도로 도입되도록 검토해야 함.
- 건설업체에 대한 의무 교육훈련제도의 성격은 그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타 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록, 영업 활동 등을 명시한 건설산업 기본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요건의 하나로 교육 이수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음.
 - 또 다른 하나는 건설업체 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니나, 건설단체(협회 등)에서 교육을 이수시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이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음. 이 경우 신규 진입 건설업체와 상습 위반 업체의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함.

(1)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명시

하는 방안이 있음.

- 건설업 신규 등록시 등록 요건 혹은 등록 절차의 한 항목으로서 대표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신규 건설업체가 그 대상이 됨. 또한, 교육 취지상 상습 위반자(예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교육 이수 시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 요건으로 명시할 지 혹은 등록 절차로 명시할 지에 따라서 등록 사전 혹은 사후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 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이전에 이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예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시 의무교육 이수 등과 유사).
 - 둘째,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 절차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일정 기간(예 : 코스닥 상장 기업의 상장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등)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 이수치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함.
- 장점으로는 교육훈련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취지인 건설업체로서의 준법 경영 및 윤리 경영 실천 유도과 건설업체로서의 사회적인 공공성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점으로는 현재 건설업 설립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교육훈련제도가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규제 완화 추세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2) 교육 이수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단체 등이 건설업계 자정 노력 차원에서 운영하는 자율적 교육과정 성격으로 하되, 제도적으로 교육 이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임.

- 교육 이수에 대한 검토 가능한 인센티브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바, 첫째로 「건설업관리규정」상 제재 처분의 감경 사유에 교육 이수를 추가하거나, 둘째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신인도 항목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에 따른 감액 사유 비율 축소 등 2개 방안이 있음.
- 먼저 국토해양부 내부 행정규칙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항3)에 의거하여 처분 횟수 및 위반 동기, 위반 내용에 따라서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 이수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른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처분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 시 감액 처분⁴⁾ 비율을 축소할 수 있음.
 - 현재 최근 3년간 건설 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인 원수에 곱한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감액 기준을 100분의 0.5로 축소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더 많은 건설업체들의 교육훈련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인센티브로 운영할 수 있음.

3) 「건설업관리규정」 제7조 3항의 감경 사유 ①처분 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②위반 동기 :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 행위를 한 후 위반 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③위반 내용 :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 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함.

4)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및 법 제83조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

※ 참고사항 : 「하도급법」 상 벌점제도의 감경 사유로서의 교육 이수(「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벌점제도 운용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시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관련 법률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 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 1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이수 시점은 건설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며, 필요시(공공공사 입찰 참여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훈련 이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도 평가 감점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바,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의 신인도 평가시 최근 1년 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감점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신규 진입 건설업체로 하되, 교육 훈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습 위반 업체를 포함시킬 수 있음.
 -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 상기의 인센티브 방안 즉,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사유 혹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에 따른 감액 처분 비율 축소 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법규 위반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점으로서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 진입 규제적인 접근이라는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신규 진입 건설업체 및 상습 위반 업체들의 교육훈련 이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단점으로 인센티브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이수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상습 위반자들의 경우에는 행정제재 처분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함.

4. 교육 내용 구성 및 운영 방안

(1) 교육 내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업종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의 대부분은 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있어서 해당 업종의 관련 법률 및 준법적인 의무사항 및 윤리적 책임사항 등 실무보다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와 소양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
 - 실무 담당자 혹은 해당 실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대부분 해당 업종과 관련된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건설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없는 상황이며, 대학에서 주로 건설업체 CEO 및 임원, 공공기관, 정부 부처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인 건설업체 교육과정으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을 비롯하여 한양대학교의 ‘에너지 & 건설산업CEO과정’,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글로벌건설CEO과정’ 등이 있음.
 - 이 과정들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1~2회의 집합 교육인 대학 연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 시장 변화 방향 및 전망, 건설업체의 경영 전략 및 기업 경영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관리 및 건설 기술과 정보화, 기타 교양 교육 등으로 과목

을 구성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미국건설협회(이하 AGC, 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에서 미국 건설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상기의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과 유사한 ‘AGC’s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이 과정은 연 1회 집합 교육으로 6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건설업체 CEO들임.
 - 교육 프로그램은 건설업체 경영 전략 및 재무관리, 위험관리, 리더십, 계약분쟁 해결, 변화관리, 건설 윤리, 안전관리, 기업 명성 및 미디어관리, 건설 생산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었음.
 - 이 과정은 법정 교육은 아니나, 교육을 이수할 경우, AGC(미국건설협회)가 인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지속적으로 관리함.
-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시험의 경우, 공사 계획 및 견적, 현장관리, 안전관리, 관련 전문 분야 지식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실무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기존 건설업체 CEO 대상 교육, 그리고 미국 AGC의 CEO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정책·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고 법규에 의한 산업적 통제가 많은 바, 건설 관련 법규 및 정책·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특히, 불법 행위 및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행정적 제재 등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유도해야 함.
 - 둘째, 당초 본 교육훈련제도 도입의 취지상, 건설업체로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특히, 건설업체 CEO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및 윤리의식,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윤리 경영과 투명 경영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 셋째, 건설산업이 대(對)국민, 대국가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건설업체 CEO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포함할 수 있음.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적인 중요성과 위치,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구조와 바람직한 건설업체 육성의 방향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또한, 법정 의무교육화할 경우에는 구성 과목 및 시간을 가급적 최소로 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이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훈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 과목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은 필요 교육 과목에 한정하여 운영하되,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CEO 및 경영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관련된 선택적 교육 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표 6>과 같이 필수 교육과목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규, 건설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윤리 요소, 그리고 건설업체 CEO 및 경영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및 소양 육성, 마인드 형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편성함.
- 선택 교육과목으로는 건설업체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 경영 관련 사항 즉, 경영 전략과 재무, 건설 인력 관리 및 프로젝트관리(계약, 시공관리 등) 그리고 건설 CEO 리더십과 기업 명성(名聲)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2) 교육 운영

- 교육 대상은 본 교육훈련의 도입 취지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인 건설업체의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건설업체의 CEO나 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과정의 시간은 가급적 피교육훈련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타 업종과 유사한 교육시간으로서 10시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앞에서 제시한 선택과정의 경우에는 시간 편성에 탄력적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6>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의 교육 내용 검토(안)

분류	구분	교육 내용	비고
	교육 과목		
필수과정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건설산업의 국민 경제적 위치와 사회적 역할 -건설산업의 사업 및 생산구조 -산업 내 건설기업의 역할	※교육 과목 및 시간은 최소화 필요
	건설산업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본적인 법규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 및 행정적 제재 -기타 건설업체 관련 정책·제도	
	건설기업의 윤리	-기업 윤리 -건설업체의 윤리적 책임과 범위 -윤리 경영 및 투명 경영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	
	건설CEO의 사명과 자세	-건설업체 CEO의 사명 -건설업체 CEO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육성 방향 -건설업체 CEO로서의 자세와 역할 인식	
선택과정	건설 환경 변화	-건설 시장 및 생산요소,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 등	※교육 이수 여건에 따라 과목 및 시간 유동적으로 편성
	건설경영전략/변화관리	-건설업체의 경영 특성과 전략, 환경 변화에 맞춘 건설업체 변화 관리 전략	
	건설재무/영업관리	-건설업체의 재무관리 및 영업활동 상의 특성과 관리 방식	
	프로젝트 관리	-계약,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 -건설 생산성 등	
	건설 CEO 리더십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건설업체 CEO의 리더십 유형과 활용	
	기업명성관리	-건설업체의 이미지 관리 및 미디어 등 대외 홍보 관리	

- 교육 방식은 교육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합 교육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등 원격 방식을 동시에 도입하여 교육 이수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가급적 정부, 학계 및 연구계 등 건설산업 내 관련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체 CEO 등 다양한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앞에서 살펴본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의 법률에서 지정하는 단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V. 결론

- 건설산업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국가와 국민 경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 따라서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역할과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라는 공공공사의 특성과 그 수요자가 국가와 국민이며, 인허가 절차 등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부정부패 및 비윤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부패의 대표 산업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결국, 건설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건설업체의 부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흡한 상태임.
- 건설업체들의 행정제재 처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 중 5년 이내 설립된 신규 건설업체들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건설업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 및 제반 경영지식, 준법 및 투명 경영 등을 교육하는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 신규 진입 건설업체들의 교육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화하는 방안과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신규 진입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제기하였음.
-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가짐. 그러나, 건설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과 건설산업에 대한 윤리적 관심 고조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진입 건설업체들의 교육훈련 이수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는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됨.

김영덕(연구위원 · 기획팀장 · ydkim@cerik.re.kr)